

2022년 이패스 무역영어 정오사항

[업데이트 일자 : 2022년 10월 07일]

본책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113p	2. 실무상 유의점 특정한 운송기관에서 다른 운송기관으로 환적을 하기 위하여 물품이 하역될 때에 특히 갑실이나 손상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환적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transshipment prohibited"라는 환적금지 약관을 계약에 삽입한다.	[오탈자 수정] "환적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29p	2. 과세환율과 수출환율 (1) 과세환율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환율을 의미하며, 송장이나 선하증권 등 과세가격의 결정 자료에 표시된 외국통화를 자국통화로 환산 후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을 산출할 때 사용된다. 과세가격 결정시, 환율을 환산할 때는 적용법령의 시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는 수입신고일 기준)가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한다. 일주일 단위로 매주 토요일에 과세환율을 정하여 고시하며 이를 일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적용한다. 즉, 수입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전주에 고시된 환율이 과세환율이 된다.	[개정사항 수정]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429p	(2) 수출환율 FOB로 정해진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외국통화의 환산율이며, 이는 주요 외국환은행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의해 환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외국통화의 환율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현찰매도율 및 현찰매입율을 평균하는 것으로 정한다. 결국 과세 환율과 수출환율은 무역업자가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에서 적용하는 환율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개정사항 수정]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